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고 문 현 (승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Koh, Moon-Hyun / Soongsil University

박 경 원 (승실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Park, Kyung-Won / Soongsil University

- I. 서 론
- II. 우리나라 환경법의 현황 및 체계상 문제점
- III.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 IV.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V. 결 론

국문초록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체결되어 온실가스 감축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체결이전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기에는 50여개가 넘는 복잡다기한 환경법의 편제로 인하여 국민은 물론이고 환경규제 담당 공무원조차 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환경법의 효율적이고 신속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환경법 규제체계의 혼란, 규제의 중복 등을 해소하여 규제의 통일성, 종합성,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환경법체계를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통합하여 체계성 있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과 같은 환경선진국이 통합환경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8304)

** 이 연구는 2013년도 승실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단일법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하위법령에의 과도한 위임으로 인한 입법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고 통합환경법전 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의회에서 부결된 독일의 2010년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80년 환경헌법 조항의 수용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전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최소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을 한 후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기존의 환경관계법에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전과정(Life-Cycle) 관리를 위하여 가칭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Pres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s increasing because agreement was signed by Paris Agreement in December of 2015. Republic of Korea propos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7 percent of the INDC in 2030 prior to Paris Agreement. Due to the establishment of more than fifty bustl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deal with emergencies, even the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the people have a difficulty in understand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his complex difficulty prevents the government officials from enforcing environmental laws efficiently and flexibly.

In order to attain unity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comprehensiveness and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laws into a single, concise, and easy way.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Sweden in environment have already enacted integrated environmental laws. Today, however, coping with diverse and complex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a single law can lead to the leviathan of a legislative owing to excessive delegation to the subordinate statutes. It is not an easy task as we can see it from 2010 German case which suffered bitter rejection of draf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in Parlia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a systematic way and prepare to avoid repeating prior trial and error such as the acceptance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article such as

Article 35 in 1980. If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fully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from scratch,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it by integrating it into a similar category and gradually expanding it.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provide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Geological Water Act in order to reduce Carbon Dioxide. Under this situation, it can be a kind of integrating into a similar category to legislate a Single Act named 'Act on Capture, Transport and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주제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온실가스감축(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환경헌법(Constitutional environmental article), 환경법(environmental law), 환경법전(environmental code), 통합환경법(integrated environmental law), 프랑스통합환경법전(French environmental code),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Carbon-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에 관한 법률(Act on Capture, Transport and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I. 서론

우리는 바야흐로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의 필연적 귀결인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로 지구 표면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발생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이른바 '기후변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라 약칭) 보고서에 따르면 1880-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0.85℃의 지구 표면 온난화가 나타났고, 해양 상층부의 75m에서는 1971-2010년에 10년 당 0.11℃가 상승했다.¹⁾ 북극의 연평균 해양빙(sea-ice) 면적은 1979-2012년 기간 동안 10년 당 3.5-4.1% 범위의 속도로 감소해왔다. 2100년까지 전 지구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세계 GDP의 5~20%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²⁾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를 에너지기후시대(Energy-Climate Era)라고 부르면서, 산성비, 오존층파괴 등의 환경오염과 같이 우리가 기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 모든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던 시대를 뒤로하고, 인간이 기후와 지구의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³⁾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2015.2, 2쪽.

2)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위의 책, 4면; 고문현·안태용, "CCS 관련 법적 쟁점", 『법학논총』, 제3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 2쪽 참조.

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이른바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채택⁴⁾되고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어 이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7%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라 약칭)기술의 채택 등이다. 독일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종료를 계획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특히 현 정부가 구성된 이후 시행된 소위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하여 꾸준히 에너지 분야의 선진화에 대비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⁵⁾ 따라서 우리 정부도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의 대규모 감축수단인 CCS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 이상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 약 32억 2천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으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약 13억 5천톤의 이산화탄소가 석탄으로부터 발생했다.⁶⁾ 특히 호주의 CCS연구소(Global CCS Institute: 이하 'GCCSI'라 약칭)는 다가올 수십 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와 같은 비OECD 국가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⁷⁾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를 핵심 과제로 의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용량에 비하여 좁은 국토에 지나치게 과도한 인구가 수도권 등에 거주하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성장을 위한 산업활동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기본권 조항의 형태로 처음 규정하였다.⁹⁾ 그런데 환경보호를 기본권 조항의 형태로 명문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헌법에 수

3) Thomas L. Friedman, *Hot, Flat, and Crowded*, New York: Picador/Farrar, Straus and Giroux, 2008, pp. 79-80 참조.

4) 여기에 대하여는 최재철/박꽃님, "파리협정 채택과 신기후체제의 출범", 전의찬 외, 「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지오북, 2016, 118-131쪽 참조.

5) 장선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독일의 2016년 재생에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6. 11, 287-288.

6)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6, 5-6쪽 참조.

7) GCCSI, 「Global status of CCS Report 2014」, 15쪽.

8)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4쪽 참조.

9) 1980년 헌법 제33조의 초안은 구연창 교수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노용희 교수, 권숙표 교수 등이 검토하였다고 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하에 2006년 4월 8일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83회 학술대회에서 노용희 교수의 기조연설참조. 고문현, "헌법재판소의 환경쟁송결정개요 및 그 정책적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2006. 5., 549쪽 각주9) 참조.

용한 우리의 입법태도는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독일은 기본법에 환경보호를 기본권의 형태로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기본법 제1조 3항에 따라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및 사법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환경보호를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명문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으로 1994년 10월 27일 제42차 기본법개정에서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기본법 제20a조)을 두게 되었다. 그 후 2002년 7월 26일 제50차 기본법개정에서 중전의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에서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의 보호라고 함으로써 ‘동물’보호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¹⁰⁾ 즉 “국가는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헌법 개정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인 1987년 9차 개정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1980년 8차 개정 헌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였다.¹¹⁾ 환경문제의 복잡성, 원리적·개별적 문제해결의 곤란성, 그리고 역동적인 자연과학적 지식 및 산업·기술상의 발전에 대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그리하여 환경권의 내용과 효과, 행사방법 등이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헌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환경권의 내용과 효과, 행사방법 등을 단지 입법권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을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구체화해야 할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¹²⁾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환경법¹³⁾은 우리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문화하기 이전인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당시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출발단계였기 때문에 외자도입을 위해서는 환경법규가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제정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공해방지법은 전문 21개조에 지나지 않는 피상적인 입법으로 위생법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법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공해를 다루는 전담기관이나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없었으며, 공해방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67년 5월에서야 제정되어 공해입법이라는 명목에 그쳤다. 환경법을 집행할 환경청이 1980년에서야 비로소 발족되었던 사실로부터 한국 환경법의 형성은 태생

10) 고문현,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대운, 2011, 39쪽, 56-154, 195-199쪽 참조.

11) 헌법상 환경조항(환경헌법)에 관하여는 고문현, 위의 책, 21-49쪽; 고문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0.11., 123-160쪽 참조.

12)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4쪽 참조.

13) Fritz Werner,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DVBl., 1959, 527-533쪽.

부터가 자생적이지 못했다.¹⁴⁾ 결국 환경법의 진정한 역사는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환경 6대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도 1991년 3월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에 따라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나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휴버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처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적으로 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환경법이 제정되어¹⁵⁾ 2017년 8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의 수가 총 50 여개를 넘어 환경법의 홍수상태이다.¹⁶⁾

이러한 이유로 헌법상 환경조항을 의미하는 환경헌법의 집행법¹⁷⁾으로서의 현행 환경법이 상호 충돌하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입법목적 달성이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환경법의 비체계성과 비효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비체계성 문제와 비효율성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써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 본 후에 우리나라의 통합환경법 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1980년 환경헌법 조항의 수용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¹⁸⁾ 처음부터 완전한 통합환경법 제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최소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을 한 후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II. 우리나라 환경법의 현황 및 체계상 문제점

1. 개설

환경규제 체계의 기초가 되는 환경법¹⁹⁾ 우리나라에서 지난 50여 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화를 거치면서 존속할 것이다.²⁰⁾

14)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84쪽.

15) 현행환경법의 체계는 헌법전문(前文), 헌법 제10조, 제35조 및 제37조 등 환경헌법조항들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 각종 분야별 환경관계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홍준형, “한국환경법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행정소송법과 환경법의 현황과 과제,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 1997. 5. 3., 236쪽.

16)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머리말(2010년판 머리말) vi 참조.

17) 김남진, “환경보전과 환경행정법”, 「월간고시」, 1988. 3, 23쪽;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I」, 법문사, 2004, 610-611쪽.

18) 고문현,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 8, 555-581쪽 참조.

19) James F. Berry/Mark S. Dennison,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New York:: McGraw-Hill, 2000), 3쪽.

20)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시기에 대한 분류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고문현,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보」, 제44권 제2호, 통권 333호, 2007. 2., 76-87쪽; 고문현,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드문 압축성장을 하였고 이러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오염의 악화를 겪은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악화를 막거나 최소한 현재의 환경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환경입법이 요구된다. 환경정책이란 “환경오염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개선하여 바람직한 환경상태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이의 달성을 위해 환경정책 수단을 결정한 행동방침”을 의미한다.²¹⁾

환경정책을 뒤늦게 추진하여 온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환경정책을 추진해왔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선진국의 환경정책의 단계를 시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한 기간구분도 어렵고, 서로 겹치기도 하며,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개략적으로 전통적 산업정책(1960년대까지), 국가경제의 현대화(1970년대), 환경친화적 산업정책(1980년대), 예방적 환경정책(1990년대 전반), 통합적 환경정책(1990년대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²²⁾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시기구분에 대하여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명칭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명칭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다. 이상돈은 공해방지법 시대(1963년-1977년), 환경보전법 시대(1977년-1990년), 1986년 환경보전법 개정과 폐기물관리법제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6법 제정, 1990년대의 환경입법 등으로²³⁾, 김홍균은 공해방지법 시대(1963년-1977년), 환경보전법 시대(1977년-1990년),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이후)으로²⁴⁾, 조현권은 공해방지법 시대(1963년-1977년), 환경보전법 시대(1977년-1990년),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시대(1990년대 초반 이후)로²⁵⁾ 시기를 분류하고 있지만, 모두 1990년 이후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하나로만 묶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90년 이후를 세분화한 분류가 등장하였는데 정희성·변병설은 1960년~1977년의 시기를 환경정책의 여명기(발아기), 1977년~1989년의 시기를 환경정책의 형성기, 1990년~1999년의 시기를 환경정책의 성숙기, 2000년~현재의 시기를 지속가능발전의 모색기(21세기)로 분류하고 있고,²⁶⁾ 정준금은 1960년대의 시기를 공해방지법, 1970년~1980년의 시기를 환경보전법, 1990년대의 시기를 환경정책기본법과 복수환경법, 2000년대로 분류하고 있으며,²⁷⁾ 환경행정연구회 공동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집, 2011. 1., 4쪽 참조.

21) 김인환·이덕길,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8, 3쪽; 정준금,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46쪽; 정희성·변병설, 『환경정책론』, 박영사, 2014, 76쪽 참조.

22) 정선양, 『환경정책론』, 박영사, 1999, 85-91쪽.

23)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84-89쪽.

24) 김홍균, 앞의 책, 12-19쪽.

25)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98-100쪽.

26) 정희성·변병설,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2006, 487-490쪽.

27) 정준금, 앞의 책, 58-62쪽.

집필진은 1960년대(공해방지법을 통한 정책 대응), 1970년대~1980년대(환경보전법을 통한 정책 대응), 1990년대(환경정책기본법과 복수환경법을 통한 정책 대응), 2000년대(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로²⁸⁾ 각각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환경정책실현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기준으로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시기인 환경정책의 암흑기(1960년~1977년),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후 198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인 환경정책의 태동기(1977년~1989년), 1990년을 환경보전원년으로 선언하고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 12월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어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정기능이 강화된 시기인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년~1999년),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정부가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2000년 8월 5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 제정·공포하고 기후변화협약, 리우환경회의의 의제21의 실천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의 시기인 환경정책의 성숙기(2000년~) 등으로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하고 여기에서는 현행 환경법의 체계를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행 환경법의 체계

좁은 의미의 환경법의 체계는 헌법 제35조 환경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개별 환경법의 최고법의 성격을 지닌 「환경정책기본법」과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관계법 등 복수법 체계로 구성되었다.²⁹⁾

편의상 환경법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 있다.

자연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대기환경분야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등이 있다.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폐기물분야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

28) 환경행정연구회,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17, 96-103쪽.

29)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6-467쪽 참조.

30) 김홍균, 앞의 책, 20-21쪽 참조.

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화학물질분야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이 있다.

먹는물분야와 관련하여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하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범죄분야와 관련하여 「환경범죄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있다.

해양분야와 관련하여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피해분쟁조정 분야와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이 있다.

기타 분야와 관련된 법으로서 「지속가능발전법」,³¹⁾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환경교육진흥법」, 「한국환경공단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3. 현행 환경법의 문제점

(1) 복수법주의로 인한 문제점³²⁾

현행 환경법체계는 오염종류별로 여러 개의 법을 제정하는 방식인 복수법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있다. 그 비판은 환경법의 비체계성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 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³³⁾ 그 외에도 하위법령에 과도한 위임방식을 들 수 있다.

1) 법령체계의 복잡성

현행 환경법체계가 복잡하게 얽히어 규제자인 환경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피규제자인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른바 4대강 사업과 관련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법만 해도 여러 개가 있고 이와 관련된 법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이루고 있

31) 종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명이 「지속가능발전법」 부칙 제4조 제10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지속가능발전법」 부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 2010.1.13>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32)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7-468쪽 참조.

33)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26쪽;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7-470쪽 참조.

어서 전체에 대한 개념 파악이 어려워 오류를 범하기 매우 쉽다.³⁴⁾ 예컨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이러한 기준과 다른 협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규제내용의 산재(散在)성

현행 환경법이 오염매체별 관리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동일한 규제내용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체계가 거의 없고 매우 산만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3) 개별법들의 형평성 결여

개별법들 사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³⁵⁾ 인·허가, 신고·등록제, 벌칙·과태료·행정처분, 하위법령에의 위임방법, 부담금의 납기규정방법 등이 그 예이다.³⁶⁾ 또한 법령의 제·개정을 임기응변적인 필요에 의하여 처리하다 보니 관련된 다른 개별법들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 없이 제·개정함으로써 비슷한 제도가 甲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乙법률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³⁷⁾

(2) 환경보호를 위해 비효율적³⁸⁾

환경법의 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복수법주의를 따르고 있어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 비효율적인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³⁹⁾

1) 오염매체별 분할법체계

현행 환경법체계는 매체별로 분할되어 있다. 이러한 분할법 체계는 오염물질이 처음 배출된 매체인 대기, 물 또는 토양에 남아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오염물질이 매체를 이동하여 복합적,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개별대책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⁴⁰⁾

2) 규제자 중심의 법체계

규제편의를 위해 규제자 중심으로 법을 제정하게 되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배출시설설치 규제의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가동하려면 현재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각 분야에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

34) 조현권, 앞의 책, 891쪽 참조.

35)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8쪽 참조.

36)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8쪽 참조.

37) 조현권, 앞의 책, 892쪽 참조.

38)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8-469쪽 참조.

39)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앞의 책, 26쪽.

40)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앞의 책, 44-48쪽.

데,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⁴¹⁾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하여 일련의 허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⁴²⁾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2일 11개의 허가·신고·승인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⁴³⁾

3) 과도한 직접 규제위주의 법체계

직접규제가 과도한 법체계는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좌절시킨다. 더 나아가 동일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인·허가의 종류가 달라진다.

따라서 간접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배출부과금제도가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경제유인적 규제방식이 아니라 명령적 규제방식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명령적 규제와 경제유인적 규제를 결합시킨 일종의 변형적 규제유형이다. 경제적 유인책은 같은 환경개선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그 준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규제대상기업들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과 활성화가 요망된다.

(3) 하위법령에 과도한 위임방식⁴⁴⁾

환경입법에서 위임입법의 빈도수가 많은 것은 과학기술입법 분야와 같이 사안의 전문기술성, 국회의 전문성 결여 및 입법능력부족, 사정변화에 따른 신속성 부여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의 확대는 의회입법 원칙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4) 평가

2017년 8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의 개수는 총 50개를 상회한다. 이렇게 많은 법률들 중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환경위기’⁴⁵⁾를 타개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⁶⁾ 이러한 현행 환경법의 방대함과 복잡다기함

41)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8쪽 참조.

42)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8쪽 참조.

43) 김홍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환경법연구』, 제38권 2호, 2016. 8., 342쪽 참조.

44) 고문현,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환경법연구』, 제29권 3호, 2007. 12., 104-105쪽;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70쪽 참조.

45) Carson여사를 중심으로 오늘의 환경위기가론이 형성되었다. Rachel Carson, *Silent Spring*, Boston: Riverside Press, 1962, 21-22쪽; Megan A. Senatori, “The Second Revolution: The Diverging Paths of Animal Activism and Environmental Law”, in: Robert J. Goldstein(ed.), *Environmental Ethics and Law*, Burlington: ASHGATE, 2004, 626쪽.

을 차제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법이 거의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률의 홍수현상으로 인한 법규범의 복잡화 및 집행력의 결여⁴⁷⁾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입법정책의 기본 틀이 특정사건에 따라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처럼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정으로 귀결되는 오늘날 한국의 입법현상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다.⁴⁸⁾ 더 나아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정된 환경법규가 적정하지 않은 것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⁴⁹⁾

Ⅲ.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⁵⁰⁾

1. 개관

2017년 8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령은 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진술하였듯이 이렇게 복잡한 환경법체계에서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체계적인 통합환경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¹⁾

2. 한국에서의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1) 유사한 개별법률 통·폐합

1) 과도하게 분화된 법률을 공통요소와 특례요소로 구분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 유사한 환경관리 수단이 대상·지역 등에 따라 과도하게 분화된 법률은 공통요소와 특례

46)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1056쪽 참조.

47) 집행결함 또는 실효성의 결여는 다른 법분야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환경법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폐기물발생억제·재활용의무의 실효성에서 볼 수 있다.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과 제2항은 폐기물발생억제와 재활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과태료의 제재는 형벌도 아니고 커다란 재정적 부담도 주고 있지 못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결여의 문제점은 빈용기보증금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관하여는 Koh Moon Hyun, "The Present State of 'Korean Security Deposit System on Empty Container' and Its Reform Measure",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Strategic Technology, 2007. 10. 4. 발표문(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Ulaanbaatar, Mongolia), 508-511쪽 참조.

48) 송동수,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환경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7권 4호, 2005. 12., 91쪽 참조.

49)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1056쪽.

50)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83-484쪽 참조.

51)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83-485쪽 참조.

요소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다.⁵²⁾

- 2) 가칭 ‘4대강 특별법’을 단일법(가칭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

4대강별로 분화된 가칭 ‘4대강 특별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되, 주민합의를 통한 제도 통합이 어려운 경우 유역별 특례조항을 규정한다. 즉,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칭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다.

-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 내에 통합

입법목적이 유사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내에 통합하여 규정한다.

(2) 기본법·일반법으로 흡수·통합

- 1) 「환경정책기본법」에 통합환경관리의 도입 근거 조항 마련

통합환경관리의 도입 근거와 같은 환경정책방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한다.

- 2) 특별법 성격을 갖는 개별법들을 부문별 일반법에 흡수·통합하여 통합적인 환경관리 방식 구현

수질·대기 등 매체별로 규정된 배출시설 인·허가절차를 통합·관리하도록 가칭 「배출시설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⁵³⁾

(3) 조직개편 후속정비 대상법률

2017년 8월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할이 다르지만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독도등도서 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독도의 지속가능성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일련의 외부요인들로 초래된 법체계의 혼란 해소

환경법체계의 정비를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그 동안 일련의 외부요인들로 인하여 초래된 법체계적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혼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

52)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83-485쪽 참조.

53)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84쪽 참조.

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도착이다.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준거개념이고 녹색성장 또는 녹색경제는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그 기본법적 지위가 박탈된 근거법률 및 추진체계와 함께 환경부에 귀속시킨 것은 지속가능발전 문제의 범정부적, 범부처적 본질에 배치된다. 이와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방안과 재통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⁵⁵⁾ 원상복구방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다시 격상시키고 「녹색성장기본법」 중 기후변화대책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가칭 「기후변화대책법」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부분을 「녹색성장법」으로 축소 또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존 관련제도를 통합하여 가칭 「녹색성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이들 두 개의 법률들을 「배출권거래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하위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재통합방안은 「녹색성장기본법」 중 기후변화대책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가칭 「기후변화대책법」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지속가능발전법」과 통합하여 가칭 「지속가능녹색사회기본법」으로 재정립하되, 「기후변화대책법」과 「배출권거래법」을 아우르도록 하는 방안이다.⁵⁶⁾

IV.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개관

전술하였듯이 2017년 8월 현재 환경부 소관 법령은 50여개가 넘어 이렇게 방대한 환경법을 알기 쉽고 체계적인 통합환경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최소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을 한 후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기존의 환경관계법에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전과정(Life-Cycle)관리를 위하여 가칭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기존의 개별 환경법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과 단일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비교

54) 홍준형, “한국환경법의 발전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환경법학의 회고와 환경정책의 법제화」, 한국환경법학회 4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제128회 정기학술대회, 2016.12.9., 11쪽.

55) 홍준형, 위의 글, 12쪽.

56) 홍준형, 위의 글, 12쪽.

한 후, 기존의 개별 환경법의 개정안을 살펴본 후 새로운 단일법 제정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기존의 개별 환경법 개정안과 새로운 단일법 제정안의 비교

(1) 기존의 개별 환경법의 개정안의 장점

1)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개정이 용이
 소관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CCS 관련 규정 사항과 법령 내용·체계상 충돌되지 않고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용이하게 개정할 수 있다.

2) 현행 개별 환경법의 개정으로 쉬운 입법이 가능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현행 개별 환경법의 관련 항목에 CCS를 삽입함으로써 비교적으로 입법이 용이하다.

3) CCS관련 시설을 환경시설로 해석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 가능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57)과 관련하여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서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51-36-01)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환경관련 시설로 해석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이 가능하다.

(2) 기존의 개별 환경법의 개정안의 단점

1)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가능성이 있음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업체 및 타 부처의 반발가능성이 있다.

2) CCS의 도입에 따라 기존 법질서가 교란될 수 있음
 CCS의 도입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 법질서가 교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3) 관계부처간 업무 조정이 곤란하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CCS업무 추진의 곤란
 현행의 관련 법령 규정은 CCS를 인식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관계부처간 업무 조정이 곤란하고 국가적 차원의 육상 및 해저 지중저장의 통일적 추진, 관련 산업 발전, 관련 규제 간의 형평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CCS 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

57)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와 같다.

(3) 단일법안의 장점

1) 통일성 유지가능

CCS 관련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면서 CCS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통일성과 전문성 유지가 가능하다.

2) 전문성 유지가능

CCS 관련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면서 CCS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전문성 유지가 가능하다.

3) CCS 사업의 중복 배제 및 체계적 운영 등이 가능

CCS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판단, 소관 부처·기관이 다른 CCS 단계별(포집-수송-저장-사후관리 등) 규제 등에서의 긴밀한 관련성·연계성을 고려한 균형 유지와 중복 배제, 체계적 운영 등이 가능할 수 있다.

(4) 단일법안의 단점

1) 법체계적 정합성의 문제 발생

CCS 단일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개별 법령을 모두 추출해 내고, 관계 부처·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단일법 사항과 개별법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법체계적 정합성(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는 특별 규정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간의 모순·충돌 등으로 집행상 문제 발생

법제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규정 간의 모순·충돌 등으로 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소결

2014년 3월 5일 경제혁신을 위하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탄소의 포집·저장(CCS)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의 관련 혁신활동 지원이 가능한 법제도 구축 방안을 검토하였다.

CCS와 관련된 현행법이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환경영향평가법」등이나 위 법률 중에서 CCS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 밖에 없는 실정이고, 현행법을 개정하려면 관련부처의 이해관계 등으로 장애가 많아 CCS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더 용이할 수 있다.

3. 기존의 개별 환경법의 개정

(1) 폐기물관리법

- 1) 처분의 개념에 ‘이산화탄소 스트림 지중저장시설’을 매립개념에 포함하여 명시(제2조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처분의 개념정의에서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하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이 “매립”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조문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최초로 사용된 “매립” 용어에 대한 설명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여기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도모한다. 즉,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이산화탄소 스트림 지중저장[地中貯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한다.⁵⁸⁾

- 2)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한 개념 정의 문구 추가(제25조 제1항)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 중에서 CCS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 밖에 없는 실정인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에는 이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도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EU 지침서」(EU Directive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2009/31/EC) 제3조(정의) 제13호(“CO₂ 스트림은 CO₂ 포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의 흐름을 의미한다.”)에서처럼 이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지하수법

이산화탄소 스트림 주입시설 및 저장시설은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지만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굴착행위 시 신고 대상에 이산화탄소 스트림 주입·저장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제9조의4 제1항의 제4호 신설)⁵⁹⁾⁶⁰⁾ 이에 따라 종전의 제4호였던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

58) (주)에코피엔지, 환경분야 CO₂ 포집 및 저장에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 (Ⅲ), 환경부연구용역, 2014.12, vi 참조.

59)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5호가 된다.

(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로 신설한다(제22조 제1항⁶¹⁾ 제18호).⁶²⁾ 이에 따라 종전의 제18호에 있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은 제19호가 된다.

(4) 토양환경보전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⁶³⁾ 항목에 [별표2]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 3관련)에 ‘CO₂ 스트림(Stream)의 대상과 저장시설’을 신설하여야 한다.⁶⁴⁾

4. 새로운 단일법 제정안⁶⁵⁾

가칭 「CO₂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로운 단일법안’으로 약칭)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⁶⁶⁾

(1) 「새로운 단일법안」의 개요

새로운 단일법안은 총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⁶⁷⁾ 제1장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60) (주)에코피앤지, 환경분야 CO₂ 포집 및 저장에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 (Ⅲ), 환경부연구용역, 2014.12, xiv 참조.
- 61)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62) (주)에코피앤지, 환경분야 CO₂ 포집 및 저장에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 (Ⅲ), 환경부연구용역, 2014.12, xv.
- 6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64) 고문현/유태신,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법학논총」, 제3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9쪽.
- 65) 여기에 대하여는 고문현/유태신,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법학논총」, 제3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3-25쪽 참조.
- 66) 고문현, “이산화탄소 육상지하저장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에 관한 공법적 과제」, 유럽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4.12.19, 57-78쪽; 고문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74집, 2016. 5. 335-336쪽 참조.
- 67) 참고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이 마련한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은

총칙, 제2장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등, 제4장 이산화탄소의 수송, 제5장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운영 등, 제6장 한국이산화탄소관리공단, 제7장 이산화탄소관리기금, 제8장 포집·수송 및 저장 관련 산업의 육성, 제9장 포집·수송 및 저장에 관한 대국민 소통,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경과규정 등을 규정한 부칙 등이다.

(2) 새로운 단일법안의 주요내용⁶⁸⁾

새로운 단일법안의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환경부의 업무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을 법제화함을 밝히고 이 사업의 관건이 되는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언급하고,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저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다.

제2장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본계획,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시행계획,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위원회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등에서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포집시설의 설치의무 및 승인⁶⁹⁾, 인허가 의제, 포집시설의 설계와 시공, 포집시설의 완공검사 등, 공동 포집시설의 설치 등⁷⁰⁾, 포집시설의 운영, 포집시설의 안전관리규정, 개선명령 등. 설치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의 취소 등,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한다.

제4장 이산화탄소의 수송에서는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자, 이산화탄소 수송시설 설치승인 등, 인허가 의제, 수송시설의 완공검사 등, 수송시설 등의 운영 시의 안전조치 등을 규정한다.

제5장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운영 등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 저장시설의 확보 및 저장소의 입지결정, 이산화탄소 저장소 설치승인 등, 저장소의 운영계획 등 승인, 저장소 관련 정보의 공개 등, 저장비용, 공단에 대한 조치 명령, 저장소 운영 시의 안전조치 등, 이산화탄소 누출 통보와 위원회 보고, 정기검사 등, 누출 책임, 저장소의 폐쇄와 사후관리,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다.

전 과정(포집, 수송, 저장)을 포함하는 전체 11개장 71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Moonhyun, Koh, "The newly proposed draft of CCS Act in Korea", The 8th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um for CCS,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 2017.7.18., 63쪽 참조.
68) 고문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74집, 2016. 5. 335-336쪽 참조.

69) CCS를 위해서는 계획에 따라 일정규모의 저장소를 설치하고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배출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는 반드시 포집의 방법에 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포집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포집하게 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70) 발전소 밀집지역 등의 경우는 포집시설의 공동설치가 불가피하거나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다.

제6장 한국이산화탄소관리공단에서는 한국이산화탄소관리공단의 설립, 사업, 임원 및 직원, 재정⁷¹⁾, 예산 등,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다.

제7장 이산화탄소관리기금에서는 이산화탄소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규정한다.

제8장 포집·수송 및 저장 관련 산업의 육성에서는 관련 시책의 추진, 연구 및 시범사업의 실시, 연구 및 시범 운영의 특례⁷²⁾, 가칭 CCS 환경센터⁷³⁾ 등을 규정한다.

제9장 포집·수송 및 저장에 관한 대국민 소통에서는 포집·수송 및 저장 사업 등의 단계별 관련 정보의 공개와 홍보 등, 포집·수송 및 저장 사업 등에 관한 대중협의회의 구성·운영, 저장소 등 설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한다. 이 장은 환경문제와 같은 국가적 사안의 경우 특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열린 자세를 볼 수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⁷⁴⁾

제10장 보칙에서는 보고와 검사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환경영향평가, 청문, 위임·위탁, 수수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한다.

제11장 벌칙에는 벌칙, 양벌 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한다.

부칙에는 시행일, 포집시설 설치 부지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공단의 설립 준비를 위한 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공단의 설립 비용⁷⁵⁾, 다른 법률의 개정⁷⁶⁾ 등을 규정한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의 환경법체계의 복잡다기성 및 난해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법을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통합하여 체계성 있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과 같은 환경선진국이 통합환경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⁷⁷⁾ 그러나 오늘날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단일법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하위법령에의 과도한 위임으로 인한 입법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단일의

71) 공단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 의한 출연 보조 외에 기금에서의 출연을 규정하고 다양한 자금 확보방안을 규정한다.

72) 연구 및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 추가적인 인허가 의제를 규정한다.

73) CCS 환경센터는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도록 한다.

74) 고문현,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 『토지공법연구』, 제7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2., 586쪽 참조.

75)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단의 설립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7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소 설치에 관한 계획 제22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소 설치사업

77)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74-477쪽, 480-483쪽 참조.

통합환경법전 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의회에서 부결된 독일의 2010년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⁷⁸⁾

이렇게 환경법이 복잡다기화하게 된 데에는 거시적으로 체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제정되지 않고 돌발 상황의 출현에 따라 이 상황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줄속적으로 제정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 결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법체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여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접근과 이해가 결코 쉽지 않다.

다수 법의 기계적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다수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만이라도 통합하고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일부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적가용기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어 과도기 형태의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⁷⁹⁾

1980년 개헌시 환경헌법 조항의 수용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고, 규제체계의 혼란, 규제의 중복 등을 해소하여 규제의 통일성, 종합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처음부터 완전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최소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을 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기존의 환경관계법에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전과정(Life-Cycle) 관리를 위하여 가칭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투고일 : 2017. 7. 31 / 심사일 : 2017. 8. 10 / 확정일 : 2017. 8. 22)

78) 고문현, 위의 글, 477-480쪽 참조.

79) 김홍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환경법연구』, 제38권 2호, 2016. 8., 358쪽 참조.

참 고 문 헌

[국내단행본]

- 고문현,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UUP), 2005.
- 고문현, 「환경헌법」, 대운, 2011.
- 고문현·류권홍, 「기후변화를 위한 에너지·자원법」,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 김인환·이덕길,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8.
-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12.
- 정준금,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 정희성·변병설,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2006.
- 정희성·변병설, 「환경정책론」, 박영사, 2014.
-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 조홍식·송상현·노상환,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주)에코피앤지, 『환경분야 CO2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연구(Ⅲ)』, 환경부 연구용역, 2014.12.
- 한상운·정희성·공성용·이창훈, 「통합적 환경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Ⅱ)-배출시설 규제에 관한법률(가칭) 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 환경행정연구회, 「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17.

[국내논문]

- 강기홍, “EU의 환경보호규정 하에서 회원국 환경법의 발전-독일 통합환경법 논의와 관련하여-”, 「유럽헌법연구」, 제4호, 2008. 12., 183-216쪽.
- 고문현, “헌법재판소의 환경쟁송결정개요 및 그 정책적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28권 제1호, 2006. 5., 547-592쪽.
- 고문현,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보」, 제44권 제2호, 통권 333호, 2007. 2., 76-87쪽.
- 고문현,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환경법연구」, 제29권 3호,

2007. 12., 95-133쪽.
- 고문현, “통합배출허가제의 문제점과 대책”, 통합배출허가제 포럼 발표문, 2008. 6. 26.
- 고문현,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 8., 555-581쪽.
- 고문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0.11., 123-160쪽.
- 고문현,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5집, 2011. 1., 1-30쪽.
- 고문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2., 463-493쪽.
- 고문현, “이산화탄소 육상지하저장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에 관한 공법적 과제』, 유럽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4. 12. 19., 57-78쪽.
- Koh Moon-Hyun, “The Outline of German Act on the Demonstration of the Permanent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Its Evaluation”, 『토지공법연구』, 제6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5., 469-493쪽.
- 고문현/안태용, “CCS 관련 법적 쟁점”, 『법학논총』, 제3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 31-74쪽.
- 고문현,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 『토지공법연구』, 제7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2., 571-588쪽.
- 고문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74집, 2016. 5., 317-341쪽.
- 고문현/유태신,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법학논총』, 제3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7., 1-33쪽.
- 고문현/신정규, “독일 KSpG의 유럽법과의 상관성 및 한국의 단일법안과의 비교”, 『법학논총』, 제3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5., 75-103쪽.
- 김유환, “환경법규에 있어서의 규제실패와 법적 대응”, 『환경법연구』, 제16권, 1994, 110-166쪽.
- 김해룡/이중영,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법의 과제”, 『한국 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 (II), 대한민국건국 50주년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교수회, 1998. 12.
-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2호, 2015. 8., 141-175쪽.
- 김홍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환경법연구』, 제38권 2호, 2016. 8., 327-361쪽.

- Moonhyun, Koh, "The newly proposed draft of CCS Act in Korea", The 8th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um for CCS,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산화탄소 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 2017.7.18., 55-77쪽.
- 송동수,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환경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7권 4호, 2005. 12., 89-121쪽.
- 송동수,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공법연구」, 제37권 11호, 2008, 243-261쪽.
- 안성경, "통합환경법 입법모델 연구: 독일 환경법전(Umweltgesetzbuch: UGB)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46집, 2009. 11., 351-352쪽.
- 장선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독일의 2016년 재생에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6. 11, 287-314쪽.
- 최재철/박꽃님, "과리협정 채택과 신기후체제의 출범", 전의찬 외, 「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지오북, 2016, 118-131쪽.
- 홍준형,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 노상환 편,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Ⅱ-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 및 그린벨트지역법령정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11-146.
- 홍준형, "한국환경법의 발전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환경법학의 회고와 환경정책의 법제화」, 한국환경법학회 4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제128회 정기학술대회, 2016.12.9., 1-15쪽.

[외국문헌]

- Berry, James F./Dennison, Mark S,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 New York: McGraw-Hill, 2000, p.3.
- Carson, Rachel, Silent Spring, Boston: Riverside Press, 1962, pp.21-22.
- Friedman, Thomas L., Hot, Flat, and Crowded, New York: Picador/Farrar, Straus and Giroux, 2008, pp.79-80.
- GCCSI, 「Global status of CCS Report 2014」, 2014, p.15.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CE 2014: SYNTHESIS REPORT」, 2015.2., pp.2-4.
- Kloepfer u. a., Michael, Zur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Teils eines Umweltgesetzbuches (UGB-AT), DVBl, 1991, ss.339-346(고문현 역, 독일 환경법전의 총칙, 「환경법연구」, 제20권, 1998, 429-452쪽).
- Kloepfer u. a., Michael, Zur Kodifikation des Besonderen Teils eines Umweltgesetzbuches (UGB-BT), DVBl, 1994(고문현 역, 독일 환경법전의 각론, 「환경법연구」, 제20권, 1998, 453-487쪽).
- Kloepfer, M., Umweltrecht, 3.Aufl., München,: Verlag C. H. Beck, 2004.
- Kloepfer, M., "Bedeutung des Umweltgesetzbuchs aus Sicht der Rechtswissenschaft",

- in: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Herausforderung Umweltgesetzbuch, Tagun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am 16. 02. 2007 in Berlin, 2007.
- Koeck, Wolfgang, “Nach dem Scheitern des UGB: Wie geht es weiter?”, ZUR, 2/2009, ss. 57-58.
- Moon Hyun, Koh, “The Present State of ‘Korean Security Deposit System on Empty Container’ and Its Reform Measure”,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Strategic Technology,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Ulaanbaatar, Mongolia, 2007. 10. 4., pp. 508-511.
- Senatori, Megan A., “The Second Revolution: The Diverging Paths of Animal Activism and Environmental Law”, in: Robert J. Goldstein(ed.), Environmental Ethics and Law, Burlington: ASHGATE, 2004, p. 626.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6, pp.5-6.
- Werner, Fritz,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DVBl., 1959, ss. 527-533.

